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
규정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진영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등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중 집행적 사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고, 다른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민간위탁사항을 삭제 및 정비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권한의 위임(안 제32조제12항1의2호 신설)

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한 도축장·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 조사·평가 및 지원 권한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

나. 인사혁신처 소관 민간위탁사항 삭제(안 제43조)
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소관 공무원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의 확인 및 통보에 관한 사무를 공무원연금공단에 위탁하는 규정 삭제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

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44조제1항”을 “제44조제2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법 제9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 조사·평가 및 지원

제43조를 삭제한다.

제4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44조제1항”을 “제44조제2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44조제1항”을 “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44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53조제1항 본문 중 “고용노동부장관은 「고용정책기본법」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취업의욕의 고취 및 직업능력의 증진, 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2항에 따른 적응훈련 중 3개월 이내의 훈련의 실시와 지원 및”을 “고용노동부장관은”으로 한다.

제5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비행장 설치자의 경우에는 제4호를 제외한다.

제54조제4항을 삭제한다.

제55조제1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2조(농림축산식품부 소관) ① ~ ⑪ (생 략)</p> <p>⑫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(이하 이 항에서 “법”이라 한다) 제4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5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(도축장·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)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2. ~ 9. (생 략)</p> <p>제43조(인사혁신처 소관) 인사혁신처장은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·제2항 또는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</p>	<p>제32조(농림축산식품부 소관) ① ~ ⑪ (현행과 같음)</p> <p>⑫ ----- ----- ----- 제44조제2항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1의2. 법 제9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 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 조사·평가 및 지원</u></p> <p>2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 제></u></p>

제4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·제2항에 따른 소관 공무원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의 확인 및 통보에 관한 사무를 「공무원연금법」 제4조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공단에 위탁한다.

제49조(농림축산식품부 소관) ① ~ ④ (생략)

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(이하 이 항에서 “법”이라 한다) 제4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5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다음 각 호의 사항(도축장·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)을 「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한다.

1. ~ 3. (생략)

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4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5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

제49조(농림축산식품부 소관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

----- 제44조제2항 -----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⑥ -----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44조제2항 -----

내 계류장 지역에 대한 항공교통의 지시 사무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위탁한다.

⑤ (생략)

제55조(해양수산부 소관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「항만법」 제20조에 따른 무역항 관리사무 중 무역항의 오염물질 수거·처리에 관한 사무를 「해양환경관리법」 제96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한다.

②·③ (생략)

⑤ (현행과 같음)

제55조(해양수산부 소관) <삭제>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70